

「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이명희·김근한·김낙관·김원섭·김재우·김정도·김춘남·
박교상·소진혁·신용하·양진오·장미경·정지원 의원(13명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명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으로 <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> 설치 의무화에 따라 위원회 신설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종합계획의 수립 개정(안 제6조)
- 실태조사 개정(안 제7조)
- 처우개선 등 사업 추가(안 제8조)
-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(안 제9조~제15조)
-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포상(안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 결과 의견 없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관련 법률과 조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그동안 미흡하였음.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권익보호,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심의할 <처우개선위원회>가 설치되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며, 본 조례 개정에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